

「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」

참가업체 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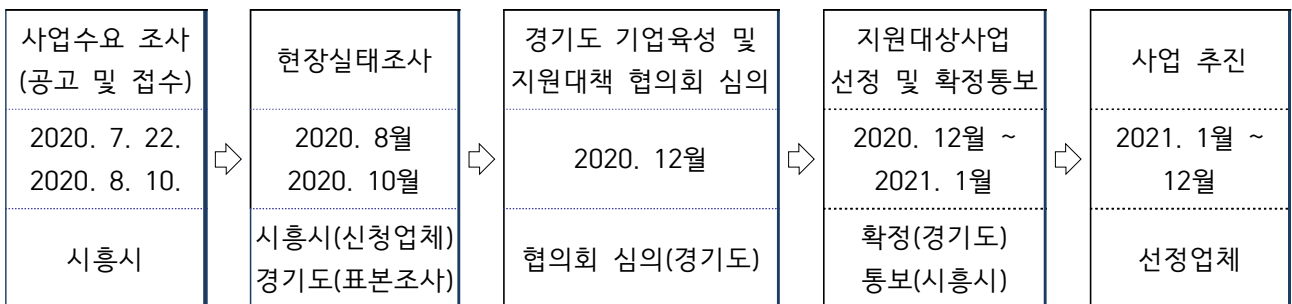
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『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』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7월 일

시 흥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(아래 항목 중 1개 사업 신청)
 1. 노동환경 개선사업
 2.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
 3. 작업환경 개선사업
-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
- 접수기간 : 2020년 8월 4일 ~ 8월 10일
- 추진절차 및 예상 일정



- 선정기준 : 사업분야별 심사표(붙임 2)에 의해 선정
 -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 지원 제외
 - 최근 5년(2016년~2020년) 사업 수혜기업 지원 제외
 - 사업 분야 중 한번이라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제외
 -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
 -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
 - 단일사업 분야 내 복수지원 가능
 - 예. 기숙사(노동), 바닥도장(작업) 지원 불가 / 기숙사(노동), 화장실 개보수(노동) 지원 가능

2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방법 : 시흥시청 본관4층 기업지원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
(2020. 8. 10. 18시 도착분에 한함)
 - ※ 주소 : 시흥시 시청로 20, 본관4층 기업지원과(장현동, 시흥시청) (우:14998)
- 제출서류

| | |
|---|---|
| 공통서류 | 1.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 1부 (붙임 1) (*HWP파일 이메일-yschem@korea.kr- 제출) 2. 자부담 협약서 1부 (붙임 1) 3.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(붙임 1) 4. 사업자등록증 1부 5. 공장등록증명서 1부 6.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.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고용인원 확인) 1부 8. 총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(내역서 및 견적서) 1부 9.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(*임차에 한함 - 건물주.임대인 동의) 10. 3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(*노동환경 개선사업에 한함) |
| 해당서류 (심사표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) | 1. 여성기업 확인증 1부 2. 뿌리기업 확인서 1부 3.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. 4.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5.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(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) 1부. 6. 어린이집 설치 기업 확인서 1부 |

- 문 의 처 :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(☎ 031-310-6094)

3. 지원대상 및 내용

| | |
|---------|--|
| 구 분 | 1. 노동환경 개선사업 |
| 지 원 대 상 | 관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 |
| 지 원 내 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◦기숙사 신축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※ 지원제외 :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 ◦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○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대상 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견폐율, 용적률 등 저촉사항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- 제외대상 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 </div> |
| 지 원 요 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(휴·폐업체 제외) ◦총사업비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◦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 |
| 재 원 비 율 | <p>도비 30%, 시비 30%, 자부담 40%</p> <p>※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: 도비 40%, 시비 30%, 자부담 30%</p> |
| 지 원 한 도 | <p>도비 15백만원 이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숙사 신축의 경우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(부가세 제외, 초과액은 자부담 총당 조건) |
| 지 원 우 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◦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◦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 ◦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|

| | |
|---------|---|
| 구 분 | 2.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|
| 지 원 대 상 | 관내 소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|
| 지 원 내 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,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※ 지원제외 :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|
| 지 원 요 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◦총사업비 20백만원 이상 사업 |
| 재 원 비 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30%, 시비 30%, 자부담 40% ※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: 도비 40%, 시비 30%, 자부담 30% |
| 지 원 한 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30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(부가세 제외, 초과액은 자부담 총당 조건) |

| | |
|---------|--|
| 구 분 | 3. 작업환경 개선사업 |
| 지 원 대 상 | 관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(제조업) |
| 지 원 내 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장치 설치, LED조명 설치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※ 지원제외 : 소모품, 생산 설비,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) 이동식 공구함, 이동식 대차 공구·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 |
| 지 원 요 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(휴·폐업체 제외) ◦총사업비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|
| 재 원 비 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30%, 시비 30%, 자부담 40% ※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: 도비 40%, 시비 30%, 자부담 30% |
| 지 원 한 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10백만원 이내 ※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(부가세 제외, 초과액은 자부담 총당 조건) |
| 지 원 우 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◦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◦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 ◦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|

- 지원 제외대상
 -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
 -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 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 -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

4.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비는 부가세(VAT)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
(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)
-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 확인
 - ※ 자부담 100%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(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약속서를 우선 제출하고, 사업 선정 후 자부담액 입금된 통장 사본 제출)
-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
- 공사비 15백만원(VAT제외)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
 -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(전기공사업 면허, 실내건설업 면허 등)
 -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(www.kosca.or.kr)사이트에서 조회 가능
- 사업비 20백만원(VAT제외) 이상인 공사,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
 - ※ 단,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)
 -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공사, 물품제조, 구매용역 : 시공업체가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. (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)
 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%이상인 경우

- 붙임 1. 사업 분야별 사업계획서 각 1부.
2. 사업 분야별 심사기준 1부.